

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청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10월 12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)

□ 제안이유

-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고 도체전, 전국체전, 세계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게 하여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·운영하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현행 4종의 직장운동경기부에 탁구와 테니스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추가 설치되는 팀은 여자팀인지 남자팀인지?</p> <p>○ 창단되는 팀의 선수단원이 단지 4명인데 연습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?</p> <p>○ 관내 체육 우수 졸업생이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선발되는 것인지?</p> <p>○ 우리선수들이 선발되지도 못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?</p> <p>○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들의 사무실이나 훈련장소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?</p>	<p>○ 모두 남자팀임.</p> <p>○ 현재 각 시군이 직장경기부 선수단 구성을 소수 정예화하고 여러 종목으로 육성하는 경향임.</p> <p>○ 우수 선수는 전국적인 스카웃 대상으로 타시로도 발탁되며 우수 선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</p> <p>○ 현재 테니스의 경우 경기도테니스협회장을 우리시에서 맡고 있는 등 팀 구성에 여건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봄.</p> <p>○ 육상, 레슬링, 검도는 종합운동장을 수영은 소사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탁구, 테니스단은 종합운동장 건물과 테니스장을 사용할 계획임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44호
의결 년월일	2005. 10. 21 (제122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10. 4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고 도체전, 전국체전, 세계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게 하여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·운영하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현행 4종의 직장운동경기부에 탁구와 테니스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2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”를 “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레슬링선수단”을 “레슬링선수단·탁구선수단 및 테니스선수단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국민체육진흥법”을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”으로 하고, 제7조제1항중 “지방공무원법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”으로 하며, 제8조제2항중 “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</u></p> <p>제2조(설치종목) 제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선수단 · 검도선수단 · 수영선 수단 · <u>레슬링선수단</u>(이하 “선수 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</p>	<p><u>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</u></p> <p>제2조(설치종목)----- ----- ----- -----<u>레슬링선수단 ·</u> <u>탁구선수단 · 테니스선수단</u>-----</p>